

화해권고결정

사 건 [REDACTED] 청구이의

원 고 [REDACTED]

[REDACTED]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, 담당변호사 [REDACTED] 조효동

피 고 [REDACTED]

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,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

결 정 사 항

1. 가. 원고는 피고로부터 [REDACTED]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대한 신청취하 접수증명서'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합의금 4,500,000원을 지급한다.

나.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의금 4,500,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'[REDACTED]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대한 신청취하 접수증명서'

를 교부한다.

2. 원고와 피고는 제1항 기재 접수증명서의 교부 및 합의금 지급이 완료되면, 원고와 피고 사이의 [REDACTED] 임대료 사건의 확정판결을 비롯하여 위 사건과 관련한 모든 채권·채무관계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정리되었음을 확인한다.
3. 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, 원고와 피고는 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돈, 손해배상, 부당이득반환 기타 일체의 채권을 주장하거나 청구하지 아니한다.
4. 피고는 제1항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압류, 가처분 등 일체의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.
5.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.
6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